

● 제30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1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2419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출 일 : 2021. 5. 25.
- 다. 회 부 일 : 2021. 5.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서울시 특성화된 가족·다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자치구센터 운영지원 등 서울시 가족사업의 원활한 광역 역할 수행을 위해,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에 다문화 거점 사무를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임.
- 가족사업의 전문성, 경험, 인적·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여 서울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2) 위탁기간 : 5년(2022.1.1. ~ 2026.12.31.)
-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 1호 허목 및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제15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가족·다문화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 운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추진 필요
- 4) 사업개요
 - 시설명 : 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소재지 : 중구 예장동 소파로 4길 6
- 규모 : 대지 537.2㎡, 건물 353.43㎡(지상2층)

구분	계	용도 및 면적
1층	176.715	교육실(106.22㎡), 교육준비실(39.53㎡), 창고(9.5㎡), 화장실(12.75㎡) 등
2층	176.715	사무실1(55.7㎡), 사무실2(19㎡), 회의실(26.5㎡), 센터장실(14.5㎡), 화장실(10.25㎡) 등

- 조직 : 4팀 16명(센터장(상근)1, 팀장4, 팀원11)
- 개소일 : 2007.10.11.
- 운영사무
 - 건강가정교육·가정문제상담 지원 및 가족 문화사업 전개
 -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가정 관련 정보 제공
 -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교육
 - 자치구 다문화 특성화사업(통번역서비스, 한국어교육 등) 지원·관리·평가
 -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소요예산(안) : 1,455,876천원(국비 13,830천원 포함)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1호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 예산조치 : 2022년 민간위탁 예산편성 예정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민간위탁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¹⁾에 따라 민간위탁²⁾(신규)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강가정교육·가정문제상담 지원 및 가족 문화사업 전개
 -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가정 관련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 제공

-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교육
- 자치구 다문화 특성화사업(통번역서비스, 한국어교육 등) 지원·관리·평가
-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2 동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검토

가. 법적사항 검토

- 「민간위탁조례」 제4조³⁾는 시장은 시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거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의 대상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⁴⁾ 및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2. 12. 31., 2014. 5. 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생략>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⁵⁾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제1호허목⁶⁾⁷⁾에 따라 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임.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1조는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9조⁹⁾에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이하 생략>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생략>
 가-피 <생략>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7. <생략>

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건강가정기본법**」
 2. - 4. <생략> [전문개정 2018. 4. 24.]

8)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1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 5. 14.>
 1.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교육·가정문제상담 및 가족생활문화운동 전개
 2.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3.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지원·평가 및 가정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9)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및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서는 동 조례 제7조제2항10)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5년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11)에 따라 위탁기간

④ - ⑤ <생략>

10)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생략>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4.>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을 5년으로 할 수 있으므로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임.

나. 통합운영과 관련

- 동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이므로 두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함.
-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를 각각 민간위탁 방식과 지정방식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점(중앙)센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있는 상황으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의 경우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인력 2명을 두고 거점센터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임.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현황>

구 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위탁기간	2019.1.1. ~ 2021.12.31.	(지정) 2021.1.1.~ 2021.12.31. ※ 위탁기간 3년이나, 통합을 위해 1년 연장
수탁기관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직원현황	14명	2명
'21년 예산	1,306백만원(전액시비)	205백만원(국비14, 시비191)
주요기능	- 가족정책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자치구 건가센터 기능강화 지원 -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자치구 다문화센터 사업 지원 -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 먼저 두 기관의 사무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는 포괄적이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조례에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이에 행정적으로 볼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업무 중 언어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행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의 실천측면에서 보았을 때, 센터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대상인 다문화가정과 그 외의 가정을 같은 욕구로 평가하거나, 클라이언트 개별화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력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보다 많은 점은 통합운영을 통해 가정(족)지원이라는 전달체계 일원화라는 행정적 차원의 효율성 추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지원이라는 효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조례에 규정된 센터 업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제11조제2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제2항
1.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교육·가정문제상담 및 가족생활문화운동 전개 2.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3.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지원·평가 및 가정관련 정보 제 4.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

	<p>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p> <p>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p> <p>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p> <p>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p> <p>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

- 「사회복지사업법」 12)은 시설을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나 하나의 시설에서 개별법에 따른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두 개의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인력기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는 다음의 표와 같음.

1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통합운영 가능한 인력의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는 “2021년 가족사업안내”를 통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지원센터의 인력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는데, 통합센터는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각각의 사업인력을 분리해서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추가인력의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지원센터의 인력기준>

- 1) 건강가정지원센터 : 독립형 4인 이상, 다기능화 센터 2인 이상
-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형 5인 이상, 나형 4인 이상
- 3)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족상담 전문인력 1~2인 이상
- 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센터) : 가형 12명, 나형 11명, 다형 10명, 라형 9명, 마형 8명 이상

▶ 통합센터 유형 구분 및 인력 내역

- 가형 : 건가 독립형(4인 이상) + 다문화 가형(5인 이상) + 가족상담전문인력(1~2인 이상)
- 나형 : 건가 독립형(4명 이상) + 다문화 나형(4명 이상) + 가족상담전문인력(1~2인 이상)
- 다형 : 건가 다기능화(2명 이상) + 다문화 가형(5명 이상) + 가족상담전문인력(1~2인 이상)
- 라형 : 건가 다기능화(2명 이상) + 다문화 나형(4명 이상) + 가족상담전문인력(1~2인 이상)
- 마형 : 다문화 나형(4인 이상)

※ 특성화사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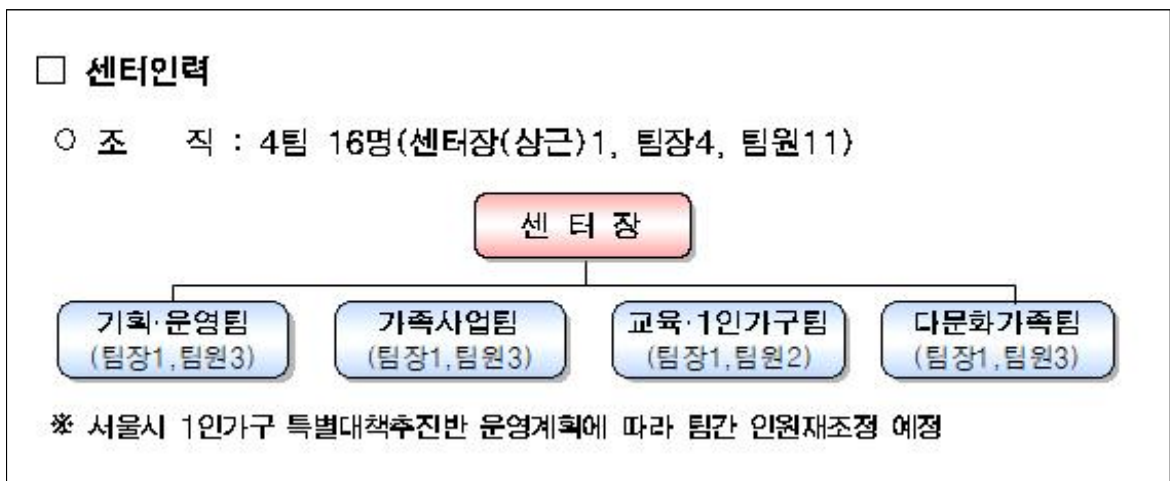
※ 본 기준은 센터의 인력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기능의 수행여부 및 가족서비스 수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인력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가족사업안내(I), pp.28.

- 서울시의 통합운영계획을 살펴보면(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계획, 가족담당관-10274, 2020.4.27.)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4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 다문화가족 거점센터는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센터를 통합하여 4팀 16명을 두고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
- 이는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력이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로 재배치됨을 의미함. 또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현재의 계획이 아닌 서울시

의 1인가구 대책추진반의 운영계획에 따라 팀별 인원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의 질적, 양적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현행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 및 조직 현황>



3 종합의견

- 시장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출한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점, 법적 검토를 통해 해당 사무를 통합운영하거나 민간위탁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집행부가 밝힌 계획안을 토대로 살펴보면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는 형태로 보이는 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하여 사무의 내용

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한 별도의 인력수급계획이나 센터의 규모와 업무분장 계획은 미흡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정 내 사회복지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단일민족을 표방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질적인 가족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복지적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동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